

국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0,11,15,20)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의 국세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국세법령 입법예고에 포함된 법령별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에서 **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완화함.

| 현행 | 개정안 |
|--|---|
|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①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수출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① ----- ----- |
|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가. ----- ----- ----- ----- 50억원 -----, |
|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 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 ----- ----- ----- 30퍼센트 -----. |

Ⅳ. 주세법 시행령 (전부 개정)

1. 편제의 개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4장(章) 67조(條)로 이루어진 현행 편제를 3장 33조로 재편성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2.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 신설(안 제2조)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을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제조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조미식품으로 규정함.

3. 주류 첨가재료 추가(안 제4조, 별표1)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기체질소를 추가하고 그 동안 국세청장에게 위임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에 규정하였던 주종별 첨가재료의 구체적 범위를 상향 입법하여 별표 1에 추가함.

4. 주류수량 및 가격의 계산시 수량 및 가격을 경감하는 대상에서 위탁제조 주류 제외(안 제6조,7조)

주세의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자·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탁주·청주·약주의 과세표준 수량 및 가격 산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는 제외함.

5.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안 제9조)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에 대해서는 증류주 등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2020년 12월 31일 개정 「주세법」)함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맥주·탁주의 주세율(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적용)을 각각 1킬로리터당 834,400원 및 41,900원으로 조정함.

6.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안 제33조, 별표2)

면세주류를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부과하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하여 위반 정도·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

| 물량별 | 주류별 | 과태료 금액 | | |
|-----------------------|-----|---------|-----------|---------|
| | | 탁주 | 위스키 및 브랜디 | 그 밖의 주류 |
| 50L 이하 | | 10만원 | 40만원 | 20만원 |
| 50L 초과 100L 이하 | | 20만원 | 60만원 | 40만원 |
| 100L 초과 500L 이하 | | 40만원 | 140만원 | 80만원 |
| 500L 초과 1,000L 이하 | | 60만원 | 200만원 | 120만원 |
| 1,000L 초과 3,000L 이하 | | 1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 3,000L 초과 5,000L 이하 | | 2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
| 5,000L 초과 10,000L 이하 | | 4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10,000L 초과 15,000L 이하 |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15,000L 초과 20,000L 이하 |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20,000L 초과 |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V. 의견제출

- ✓ 온라인 의견 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 법령별 의견 제출 부서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
 2.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
 3. 주세법 시행령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suguni@korea.kr
- ✓ 다음 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법령별 담당과)에 제출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첨부파일

- 첨부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첨부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0)
- 첨부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첨부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1)
- 첨부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첨부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5)
- 첨부7.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첨부8.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20)

| Contact



김승욱 관세전문가
T 02-6011-1535
E sokim@esein.co.kr



안성호 관세전문가
T 070-4353-1529
E shahn@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0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